제7차 『시민미디어포럼』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녹취록

일시 2008년 5월 15일(목) 오후 3~6시

장소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후원 한국언론재단

<7차 시민미디어 포럼>

제 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Session 1 : 제 1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사회자 :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토론자 : 고민수 강릉대 법학과 교수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김성벽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
조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 방송위원회 부장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논의 사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법적으로 민간독립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민간'과 '독립'은 어떠한 의미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가?

2.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기 방통심의위가 주력해야 하는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3. 매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과 방통심의위가 직접 맡아야 하는 역할 사이에는 어떠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가?

윤정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윤정주입니다. 어렵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토론, 1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

대표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권미혁

네 반갑습니다. 민우회는 이 심의라는 주제로 세 번의 토론을 해 왔습니다. 미디어운동영역에서 심의라는 영역을 특히 주목해서 그동안 봐 왔는데요. 오늘 또 마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구하는 심의위원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어떻게 심의 할 건가라는 토론회가 시의 적절했다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토론자들께서 심의를 다루는 눈도 다르고 심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릅니다마는 매체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점을 오늘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모쪼록 이 토론회를 통해서 출범은 했지만 아직 좀 불안한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주시고 심의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미디어영역에서 심의라는 주제가 보다 중요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토론자 여러분의 즐거운 토론, 훌륭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정주

그럼 토론 시작 시간을 좀 넘겼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세션 사회를 맡으신 강남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강남준

안녕하십니다. 전 세션1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남준입니다. 사실상 이정도의 토론이면 이것보다 삼분의 일, 사분의 일 되는 방에서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대토론회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사실상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각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아주 도식적인 형식을 안 취하고 그냥 오픈 퀘스천 식으로 1세션 3개 2세션 4개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토론자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같이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토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형식적인 토론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민우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했는데 그 발족과 발맞추어서 그 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든가 위상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세션에 토론을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대학교 법학과에 고민수 교수님이십니다. 이 토론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 가나다순으로 하는 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강남준이라 일번이라서 저 어쩔 때 거꾸로 밑에서부터 하는데 오늘은 정상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이신 김동준실장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인 김성벽과장님이십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방송위원회 부장이신 조기진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최영묵 성공회 신방과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님 이십니다. 세션1에서 세션2가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저희가 3시 1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시에 끝내려면 한 세션 당 한 시간 반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90분, 또 계속 앉아 있으시려면 피곤하실테니까 한 10분

을 쉰다 따지면 저희들은 4시 30분이나 4시 25분쯤 끝날 것 같습니다. 저한데 주어진 시간이 80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4개의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하는 거니까 한 개 주제에 20분정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백미숙 심의위원께서 오셨네요. 심의위원께서 오셨는데 여기서 잘못된 소리하면 잘못되겠네요. 4개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은 한정을 한 것은 아닌데 대충 한 20분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토론을 의뢰 했을 경우에 어떤 주제 어떤 주제 발표해 달라든가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많이 발표해 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의 주제가 곧 출범하게 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민간독립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민간'과 '독립'은 어떠한 의미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민간 독립기구라는데 민간이면서 독립이냐 사실상 정부면서 독립일수도 있고 민간이면서 독립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한 콤비네이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 독립심의기구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공 영역 상 고민수 법학과 교수님이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먼저 화두를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수

먼저 저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여성민우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릉대학교 가기 전에 구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기초화한 융합 추진위원 지원단의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이 부분은 제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이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만든 초안이 어떻게 변질 되서 지금 현재에 나타났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 드릴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질문 자체를 나눠 봤습니다. 말하자면 민간과 독립은 어떠한 의미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인데 이것을 나누기를 첫 번째 민간 독립 기구라는 표현 이거 적합한지 규범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 보고 그렇다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규범적으로는 어떻게 호칭되는 것이 그 위상을 밝히는 데 적절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성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순서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일반적으로 민간 독립기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민간독립기구라는 표현은 규범적 개념이 아닙니다. 즉 민간독립기구라는 표현으로부터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내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조직원리 등 행정조직법적 차원에서 그 위상이 평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과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한 이른바 수준 기속적 기준의 준수 내지는 위반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것을 핵심적 기능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의결의 내용은

법적구속력을 갖는데 즉 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 처분 등의 내용을 결정하는 의결권한을 가지고 이런 권한 행사의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처분 의무를 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살펴보면 법률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즉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 외부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소속되어 자문, 심의 등을 심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과는 법적 성격에서 구분이 되고, 또한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을 구속하는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직무 독립적 행적 행정기관과도 구분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조직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같이 공정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없는 삼자로 구성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위원회 같이 사안의 전문적 기술적 성격으로 인해서 전문가적 견해와 조정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예도 있고, 노동위원회와 같이 각계· 각층의 이해 또는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남북교류추진협력위원회와 같이 정부부처 사이 의견 조정내지 협의 등을 목적으로 각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서 구성하는 방식을 모두 혼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에서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공무원은 심의위원회가 될 수 없고 정당원과 이해관계자인 방송통신 사업관련자 종사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조직구성 원리를 보면 심의위원회는 공정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과 운영 조직원리로 봤을 때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심의위원회는 이른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행정위원회가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라는 것은 외부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가 행정위원회라 할지라도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면 외부의 독자적인 의사 표시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소송법적 측면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소송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심의위원회는 행정청적 성격은 갖지 않는다 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는 직접 국민과 권리 의무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이죠. 그래서 이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한 장치로서 무엇이 요구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문제점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핵심적 기능인 수준기속적 여부에 대한 준수 내지는 위반여부대한 심의 의결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것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가 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결정내용이 이른바 존속력을 가져야지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지 이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보장 될 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즉 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이 함부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 7조 제4항에서는 방송법 제 100조 제 6항 제 7항 중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정한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 이의는 누구한테 제기하게 된 것이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심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의 지위를 갖는 심의위원회 경우에는 그 위상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본 대안으로는 재심 관련 규정을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는 입법개정에 관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재심 관련규정을 아예 폐지를 하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에 합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준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심의위원회 조직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행정행위라든가 행정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나왔는데 홍성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홍성걸입니다. 이런 쪽의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 행정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좀 이상한 기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인데, 민간조직의 의사결정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민간' 혹은 '독립성'의 의미를 행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명합니다. 정부공무원이나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람들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 5장이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법규인데요. 이 5장에 속해있는 제19조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19조와 제20조에서 공무원들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과 판사만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그밖에도 정당인도 안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과 독립성이 조금 뭉뚱그려져가지고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공적인 사람이 아니라 민간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선이나 혹은 이념적 지향 등으로부터 탈피해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특정 공무원이나 정치인, 이해관

계자 등이 임명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구성원의 자격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독립성은 여러 가지 실천적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고 약간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적 압력이나 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이 있을 수 있고(예: 임명권자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위원 개인의 독립성과 기관으로서의 심의위원회의 독립성도 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치적 독립성의 측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3인을,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인을 각각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명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치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뭐 국회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이 말은 '독립'이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이야기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맥락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규범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의 추천권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 소관 상임위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독립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정말 공정성이 필요하다면 소위 민주주의에 3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이나 법조계에서 추천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독립이나 의사결정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협의는 하지만 여야가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집권여당이 훨씬 많은 위원을 임명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위원의 구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에 심의위원회들 개개인의 양식과 양심과 전문성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한 보안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구요. 국회 상임위하고 국회의장이 6명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은 최소한 60%이상은 집권 여당 쪽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종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그것은 위원구성자체를 방송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배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 다른 규정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심의 위원들이 개개인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이익단체로부터의 압력을 견뎌내는냐 하는데 있다고 보여집

니다.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호의 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은 관련된 이해 관계자 당사자들도 보고, 시민단체들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여성민우회도 이러한 시민단체들 중 하나이지요.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심의위원들이 명백하게 이해관계에 치우친 결정을 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결정하는 등 공정성이나 공공성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감시체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런 것을 거버넌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정부 의한 일방적인 지배나 통치가 아니라 협치 라고 하지요. 시민단체, 이해관계당사자 모두다 하나의 형식적인 기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주시하고 감시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겁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관의 독립성과 위원의 독립성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앞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관의 독립성의 측면에서 보면 심의위원회는 분명 민간기구인데 실질적 행정 행위로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 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 처분을 요청 받을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 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 의무화 시킨 것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발효시키지 않을 그러한 능력을 뺏은 거니까 결국은 기관의 독립성은 이 조항에 의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자기가 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죠. 위원의 독립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개별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개인이구요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위원자체의 독립성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뭐 위원들이 공정하고 공평,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전문성과 양식에 맞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강남준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계신 조기진부장께서 외부에서 걱정하는 '독립성'과 '민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서 보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20분씩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드릴테니까 신경 쓰시지 마시고 3분에서 5분정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기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 조기진입니다. 아직 보직은 없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심의위원회 출범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사무처는 정상화 안된 상태이구요. 그런 관계로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다고 사회자께선 소개를 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보다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앞의 두 분의 교수님이 워낙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가지

고 저는 더 이상 설명 드릴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다 알다시피 민간이란 의미는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 면에서 볼 때 심의위원이나 사무처 구성원들이 전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 방송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던 것과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헌법상 국가기관이나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된 것이 방송과 통신의 내용 심의에 대하여는 행정부처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결코 정치행정학상의 순수민간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과정이나 재원조달 이런 문제를 볼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이라는 의미는 심의위원회의 직무 즉 심의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향후에는 이것이 단지 정부로부터의 독립보다는 개념이 더욱 확대 되어서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도 독립되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식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민간의 의미를 자꾸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하여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현행법상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자적인 행정처분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재조치 등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는 조직 설립과정에서 지나치게 민간기구라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심의위원회에 독자적으로 부여함으로서 독립성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완전하게 심의위원회가 완료함으로서 심의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정부부처의 개입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고민수교수가 말씀하신 심의위원의 행정처분권한을 심의위원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강남준
조기진 부장님께서는 개인의 견해입니다 라고 했지만 심의위원회에 계실 테니까 심의위원회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토론과 똑같습니다. 하라고 하면 안하고... 말씀하시죠. 5분정도, 최영묵 교수님 말씀하시죠.

최영묵
두 분 말씀하신 것은 충분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역사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 대단히 피곤한 조직이고 별 실익 없는 조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단언해서 이야기 싶은데, 그 이유는 앞에서 몇 가지 나왔습니다. 실제 권한은 없고 굉장히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심의행위들의 영역은 좀 넓어졌습니까? 방송만 해도 옛날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생겼었는데 융합형 매체에 인터넷까지 결합된 그것을 통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방윤 60년대 방송윤리위원회 시대 이후에 한 5차례 바꿨거든요. 이게 그

래서 방윤은 공보처가 있었고 거기서 상징적인 기관이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죠. 반발이 심해서 실제로 윤리적인 것을 선언만 했지 규제는 별로 안했고, 이것과 유사한 기관으로 설립 됐던 것은 80년대 방송위원회 산하에 방송심의위원회 사실상 80년대는 워낙 강력한 파시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 심의할 것도 별로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에다가 약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 규제하는 기능으로 했던 것 같구요. 그리고 1기 방송위원회가 88년부터 99년까지 대략 간 거고, 거기선 심의기구가 다시 내부화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통합방송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전의 어떤 조직보다 강한 권한을 가졌던 통합방송위원회가 역시 내부화한 심의 기구를 가지고 있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된 이런 형국인데요.

이렇게 산하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된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을 얼마나 규제 할 수 있을 것이냐 대단히 의문이라는 거죠. 사실 심의위원회가 아무리 할려고 해도 정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어를 해 버릴 수 있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구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 방송위원회는 내부화 되어있을 때 어떤 면이 있냐면 그 사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기능과 오늘 이 회의를 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접점을 가지고 심의문제와 이런 것들을 여론화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런 또 다양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영역 밖이고 순수하게 규제만 해야 되고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권한도 취약한 상태이거든요. 문제는 반발이 심해질 것이고 결정적으로 규제 형평성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블TV와 지상파가 뭐가 다르냐. 케이블에서 위성, IPTV, DMB, 사이버스페이스,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 그걸 같은 기관 안에서 차이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에서 대단히 힘겨운 일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근데 지금 방통위 출범 이후에 이 위원회 출범이 굉장히 지연됐는데 전 그냥 성찰적 차원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방송통신심의 안돼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무엇이 발생하고 있느냐 오히려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서서 이 심의 안 된다고 설치고 정치적인 필요성이 급증해 있지만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선 별 문제 제기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찰적으로 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요새 케이블TV에서 심야에 야한 방송한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났던데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안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률은 더 높아 질 수 도 있겠죠. 하지만 공공적인 그런 쪽은 약해 질수도 있겠고... 김동준 실장, 김성벽 과장, 기구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준

지금 1번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민간과 독립이 갖는 의미들.. 앞서 선생님께서 행정적인

의미들 법적인 의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간과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국가나 정당이나 정치권이나 이쪽 또는 사업자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기구를 의미하기 위해서 민간과 독립이란 용어가 계속 나왔고 이 용어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용어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독립으로 출범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민간독립일 것이냐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인데, 기구 설치법 18조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제재권한은 있는데 처분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앞서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이 방통위원회와 걸리면서 과연 이게 민간독립기구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 거구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우 어떻게 행보를 보이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그런거겠죠. 방송위원회 산하에 방송심의위원회에 있었지만 그거 보단 일단 잘해야 될 거구요. 그러려면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아주 부정적인 모습들, 예를 들면 회의를 공개를 안 한다든가 회의록도 제대로 안 올라 오는 부분들 그리고 민간 독립기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 맞게 민간과 의사소통이 잘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벽

정부부처에서 같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굳이 말씀드린다면 정부부처에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입장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꾸준히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으로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아동청소년 매체 환경과의 주요한 역할이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심의부분, 유해매체에 대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전에 방송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우리나라의 법적인 심의기구와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저는 오늘 논의를 보면서 여전히 이 논의의 주안점은 주로 통합되기 이전의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요. 그러면서 오늘 와서 반성을 해야하는 것이 심의기구의 위상이나 구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과 되서 논의 됐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민감성도 이야기 했고,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상대적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심의기구의 역할에서 본다면, 그것이 기구의 존립자체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보면 기구 설치법 논의과정에서 더 치열한 논쟁과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이런 심의 기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책기구 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집중이 됐어요. 특히나 여기서는 적절치 않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치열한 논의의 장을 그 쪽으로 이끌어 가면서 거기에 같이 시민사회영역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만 흘러갔고 진짜 중요했던 심의, 콘텐츠 심의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논의가 간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방치된 상황에서 지금 심의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방송의 정치적 민감성 특히 공공성 영역 등 지금 그 틀의 논

의를 여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 이를 논의하는 사람들도 한번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구요.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독립성, 기구의 독립성,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독립성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할과 과제라는 부분에만 천착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딱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공공성심의와 유해성심의 두가지가 있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던 불법 콘텐츠 심의와 청소년 유해 콘텐츠 심의, 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대로 묶여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업무를 맡으면서 봤습니다만, 공공성 심의라는 부분의 굉장히 애매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 업무량으로는 굉장히 적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론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균형성을 잡는다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이렇게 와 버렸는데 그것이 더 문제를 발생하게 될 소지가 더 많다, 즉 우리가 말하는 불법성 아니면 유해성 콘텐츠 심의부분까지도 이 정치적인, 그 뭐라고 할까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외풍에 굉장히 휘둘릴 염려가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대로 된 위상을 잡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감한 부분의 공정성심의 부분을 따로 떼서 아주 작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 심의를 하게하고 정말 유해한 부분과 불법적 요인들만 통합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참을 같이 못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독립성 부분을 자꾸 얘기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독립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선 단계는 굉장히 요원하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은 어쨌건 간에 이런 콘텐츠 심의결정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의 결정이 됐으면 그 심의 결정이 행정기구로 하여금 기속력을 부여 받아야 되는데 그 기속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쨌건 간에 법에서 이에 관한 굉장히 엄밀한 차원의 제재조치, 법적 조치들이 명문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에 대한 재판단을 하는 식으로 오픈을 해놓는다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성이 부여 안됨으로 이것의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른 제재조치와 규제들을 명문화 시키고 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구로 넘겨주는 거, 그러나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행정행위만을 하도록 규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준

지금 저희가 할당받은 시간의 거의 반을 첫 번째 주제로 다 보냈는데 저는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 큰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서 어떻게 하

면 잘 될까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비롯해 근본적으로 어떤 법적인 원칙도 있어야하는지 등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자료집으로 정리할 것이구요... 시간상 두 번째 주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디어환경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기 방통심의위가 주력해야 하는 역할과 과제는 무엇으로 보는지요. 아까 피곤하고 실의 없는 기관으로 될 것 이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출범을 했으니까 이것만은 열심히 해 주세요 라고, 먼저 최영묵 교수께서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최영묵

제가 별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 봐도 비디오라는 얘기가 있듯이 앞날이 좀 암담한 면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내용규제에 있어서 정당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외피조직정도로 실제로 바람맞이 역할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이지요. 방통위의 행태로 보나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상황 어떻게 그나마 타계 할 수 있겠느냐를 같이 고민을 해야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그 실제적 위상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는데, 법을 입법을 하신분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방통위와 심의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대사회적인 요구들을 반영해서 가야된다고 봤을 때 심의가 적극적인 그런 어떤 요구들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고 방통위와도 그렇구요. 이게 실제적인 규제 방법이 없을 때 사업자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라는 거죠. 사업자들이 지금 작은 사업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힘없는 개인들 규제만 하는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역할 이외에는... 사실 통신이 만만합니까? 방송사 케이블TV도 이젠 거대한 조직으로 재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냐는 문제는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대사회적인 관계의 접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민우회에 고마워해야 되지 않느냐 심의위가 적극적으로 벌여야 하는 일들을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업무영역인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방송과 통신이 섞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융합형 미디어의 규제용 기구가 생긴 것이고, 그 영역이 추가 된 것이라고 봤을 때 대가족이 탄생한 것이 아니고 다세대 동거형의 어떤 조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통신은 통신대로 가고, 전통적인 방송은 안 달라졌습니다. 다만 IPTV같은 융합형 매체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 산하기구인 심의위원회가 지적해야 할 분야도 새로 출범하게 되는 융합형 매체들을 어떻게 규제 할거냐 입니다. 내용심의 자체도 아무런 규범 체계가 없거든요.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치고 나가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어차피 다양한 매체별 심의 규제 차별성이나 원칙을 확정하는 것하고 그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규제 행위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 그런 것들을 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구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인터넷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로 갈 것이고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문제도 사실 KBS가 경영위원회 체재로 가자고 주장을 했을 때 심의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모호해 질수 있거든요. KBS가 독립적인 기구의 관할을 받는 것을 추진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MB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것이냐 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을 경우에 과거의 지상파 방송의 규제라든가 전통적인 통신의 규제라든가 하는 문

제들을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란 어려우니까 새로운 영역 중심의 IPTV나 융합형 매체중심의 규제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이전 것들은 계승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후에 다른 모색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남준

네 말씀이 지금 현재 방송 융합이라고 하지만 방송 결합 정도가 아직 방송 융합은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융합이 되는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체제를 인수하면서 디벨럽 하는 방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섯분들이 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 하셨으니까 민우회가 초대한 기본적인 의무는 다 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발표하실 것은 없구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 화두를 던지신 것처럼 됐으니까 더 포함해야 할 것이 있는지...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고민수

제가 멀리서 와 가지고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가야지만 멀리서 온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묵 교수님께서 매체별 차별규제를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방송위원회 그전 구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다른 조직이었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신문방송학 이론상에서 매체별 차별 규제 이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니어서...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 해온 매체별 차별 규제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IPTV 도입을 가지고도 한참 논란을 벌여 왔던 그 핵심이 뭐냐면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 아니면 융합형 서비스냐 이렇게 논란을 벌여왔다는 거죠. 한데 지금 정리 된 것은 방송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송 안에서도 다시 또 지상파냐 케이블이냐 위성이냐 다시 구분할 것이냐, 이 구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청자 내지는 수용자에서 누가 더 많이 도달 되서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다시 제고 될 것인지 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주력해야 할 역할 가장 시급한 것이 그 자신의 위상에 대한,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질문자체가 법적으로 민간독립기구의 위상 이라고 했지만 이건 법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법적개념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민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아니죠. 법에서 의해서 설치된 행정위원회인데 이게 왜 민간입니까 그 위원 구성원들이 공무원이 배제 되어 있다 라는 의미정도이지 행정위원회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독립이란 의미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립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범적으로는 하나는 직무상 독립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조직의 독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의 독립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외각에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상 독립은 행정관청에 소속된 행정위원회도 대부분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라

고 이름 불리는 이 행정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게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정체성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용어 사용의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오류를 범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서 오류를 범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오류를 범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견과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심의기구 심의기구하는데요. 이 심의기구가 무엇이냐 행정위원회예요. 합의제 행정기구에는 자문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 위원회도 있고요 의결의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름만 붙여 주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규제를 하는 것이 심의 규제가 다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정부 부처 행정관청 소속에 있는 많은 행정위원회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심의위원회라고 안 부르죠. 왜 이걸 심의위원회라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하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너희들은 내용규제 하는 기관이고 너희들을 심의위원회로 부를게 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는 이 조직은 이 기관은 이 위원회는 단순하게 내용에 대한 결정 논의해서 결정하는 권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입법화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심의위원회라는 이름, 그 타이틀만 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법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규범용어로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이다 라고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현실에서 이렇게 부른다. 일상적인 용어로 이렇다 그러시면 사용하셔도 되지만 법적이다 법적이라는 것은 어떤 구속력과 규범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 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부분, 자신들의 정체성 위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 이걸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매체 차별이라는 걸 진리인 듯 전제하고 논의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검토 할 것인가 에 대해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준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홍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성걸

그러 실 것 같아요. 저도 사회 많이 봐 봤는데요. 시간배정에 실패한 사회자는 군대에서 배식에 실패한 거와 비슷합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체 차별, 매체간 차별은 이번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데 가장 큰 이유였던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아직은 물리적으로 한꺼번에 갖다 놓은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갖다놓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매체간 차별적 규제와 관련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분야에서는 보통 규제 있는 곳에 부패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심의는 기본적으로 내용심의인데 사실상은 내용규제거든요. 행정상으로 보면 규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규제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든가 창작의 자유라든가 의사 결정의 독립성, 어떤 콘텐츠를 볼거냐 말거냐, 어느 수준까지 볼거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은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우리사회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용심의를 통해 서로 상반된 가치를 균형을 잡으로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반론적 측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의 원칙은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최소 규제의 원칙이 우선 적용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거 규제해야 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는 내버려 둬라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 콘텐츠의 소비자가 알아서 한다. 명확하게 이것은 규제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심의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체별 특성에 따른 규제의 다양화 또는 차별화에 대하여는 저는 반대입니다. 미디어의 특성에 상관없이 심의위원회의 고객을 정책고객이라고 한다면 이들 고객들이 대부분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콘텐츠를 방송하거나 유통시키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왜 큰 불만을 정부에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게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규제와 심의를 복합적으로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면서 정책고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일반적이었던 중층적 규제로부터 벗어나 한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된 바에는 우선 최소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가급적 공통적인 심의기준을 통합해가지고 해서 매체별 규제를 줄이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일 콘텐츠 일 심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준

네 고맙습니다. 이제 군대도 자율 배식이기 때문에 토론도 자유로이 하시니까 어떻게 강제적으로 시간을 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좀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기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과거 아날로그시대의 심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체 환경변화가 워낙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기존의 심의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홍 교수님의 소비자 중심의 심의방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규제 기관 중심의 심의에서 소비자후생 중심의 심의로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과거 방송위원회에서도 시청자불만처리와 같은 제도가 있었고 또한 통신분야에서도 청소년 유해매체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소비자 즉, 시청자나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심의 과정에서 시청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주관적 의견을 객관화시키는 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율심의 기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 본래의 심의 기능과 사업자들의 자율 심의 기능을 서로 연계시켜가지고 심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시 저한데 발언권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막 출범 했습니다만 이제 갓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올바른 정보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관련단체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많은 성원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준

제가 네 번째 주제로 한마디씩이 좀 좋은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요... 조기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연적으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 갔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매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날로 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맡아야 하는 역할 사이에는 어떠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김성벽

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준

네 그러세요.

김성벽

두 번째 주제와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심의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사업자나 소비자 판단에 맡겨야 되고 최소 규제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정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부분으로만 모든 매체를 판단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기획마케팅에 의해 휘둘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매체물들이 유통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구요. 심의 업무를 3D업종이라고 일단 말들을 많이 하죠. 저희들도 모니터요원을 두고 있는데 한 달 있다가 다 나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인터넷 기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하는데 그 인터넷 모니터링이 자꾸 일상생활 속에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유해한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것과 연계 되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기가 이번에 출범했는데 제일 먼저 집중해야하는 되는 부분이 사회의 건전가치를 지키는 역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독립성을 좀 확보하는 것과 연관해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의 대한 심의 내지는 등급분류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특히 IPTV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같이 고민을 해야하는데요. 이번 대구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부분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IPTV 부분입니다. 이 법도 출범하기 전에 나타났던 모 IPTV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19세 콘텐츠를 내리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의 메뉴에 넣지 않겠다고 까지 선언을 하는 발 빠른 행보가 있었는데요. 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심의 권한을 줬던거 이것이 여러 가지 헌법적인 논란도 불러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러한 영역을 방통심의위원회가 줬단 말이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는 대단한 규제 권한입니다. 이 규제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그 마무리가 있구요. 또 하나 우리사회의 건전가치관을 현실에 그대로 맞춰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비록 현실에서 약간을 벗어나 있더라도 우리사회가 지켜야 하는 가치관의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제시를 하는 부분이 큽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추세도 심의의 역할을 거기서 찾고 있고요. 즉 심의라는 것이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심의의 기준을 잡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 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잡아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자율 규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세 번째죠. 최근에 매체의 영역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규제를 통한 어떤 유해 콘텐츠, 불법콘텐츠에 유통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자율규제가 인터넷 사업자들도 하고 방송사업자들도 하고 특히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체 심의가 굉장히 느슨하고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율심의, 자율심의라고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말 그대로 자체 심의라고 하죠. 굳이 말을 붙인다고 한다면 모 케이블TV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편성표에는 19세를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에는 15세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벗어나서, 그 규제를 벗어나서 그 시간대에 방송하기 위해서 15세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편성표에는 19세를 붙여놨단 말이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느슨하기 짝이 없는 자율심의를 그대로만 방치 할것인가... 저는 자율심의가 확대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안전적인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자체적으로 심의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그 심의의 행태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그 심의관을 박탈하는 그런 정도의 제재들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져야만 이 자율심의라는 것이 진짜 자체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로 자리 잡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심의와 그것에 어떤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균형적인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준

네 고맙습니다. 김동준 연구 실장님께서 공공성과 관계해서, 아무래도 공공성과 자율성에 대해 말

씀하실게 있을 실 것 같은데 말씀해주시죠.

김동준

네 이번 주제 관련해서 발언을 못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당부죠.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심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동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왔지만 우리가 너무나 익히나 잘 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휘둘렸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도 동의를 받지도 못하고 신뢰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됐었는데 새로 출범한 심의위원회는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일을 위해선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구요. 여기서 삼번 주제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저도 심의 그러니까 규제, 심의, 타율규제보다는 자율심의로 가는 것이 맞다는데 동의합니다. 헌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송사 같은 경우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심의 그 부서가 한직인 경향이 많고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사 내부적인 자율심의가 좀 개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융합매체가 곧 들어오는데 IPTV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올지 모르고, 디지털 케이블도 많이 되고 있는데 향우 융합 매체에 짐작은 가지만 이 콘텐츠가 어떤 것이 실릴지 잘 모르거든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위성DMB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선정적이라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공성성의 기준을 저희가 정말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 공정할 수 있는 거고 저기서 보면 공정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것을 타율적으로 판단 할 수 있겠는냐 하는 것에 회의적이라서 공공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면 차라리 심의를 선정성이나 폭력성에 쪽에 명확하게 두고 그쪽의 심의에 치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 공공성이나 공정성 기준으로 계속 간다면 앞에 방송심의위원회가 범했던 오류를 또다시 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준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홍성걸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규제 잘 안되거든요. 자율규제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규제 잘 안되고 타율규제에 의해 넘어가는데 안되는 이유는 타율규제에 대한 불이익과 그것을 위반해 때와의 이익을 갖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불이익이 훨씬 크다면 그러면 자율규제 열심히 합니다. 그 미국사람들이 스피드티켓 안 떼려고 속도 위반을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 사람들이 운전을 얌전하게 해서가 아니고 거기는 스피드 티켓하번 띠면 제일 적은 게 25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같으면 250불 내고 싶지 않죠. 그것만 입니까. 하루종일 가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자율규제하라고 했는데 안해서 타율규제 넘어와 가지고서 이거 위반했다 하면 방송사든 어디든 매체가 하여간 벌금을 왕창

물리는 거죠. 이게 휘청거릴 정도로 물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장님이든 뭐 편성국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직접 나와서 교육 받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누구 대신 보내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거 안 지킵니까? 지키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현실은 안 지키는게 훨씬 이익인데요.

강남준

최영묵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최영묵

고민수 교수님 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용어를 바로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저도 용어를 바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게 이거 매체별 차별 규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체별 규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별과 차이는 다르죠. 일부로 의도적으로 차별을 한 것이 아니고 역사성이 다르고 그 규제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사업영역이 있고 법적 근거가 다르고... 근데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 왜 차별이냐 이런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싶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요 IPTV, 방송통신위원회 놓고 수십년 싸웠는데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됐고 IPTV가 방송으로 분류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사회에서 방송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대단히 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든요. 이후의 정책에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누구나 방송영역에 진입하려고 하죠. 블루오션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방송영역의 배려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동일한 과거에 해왔던 것과 동일한 규제와 제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진입을 해서 모두 형편상 동일한 포지션이 됐을 때 그 때 합의해서 풀어라 라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다른 포지션에 있는 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없애자는 주장들과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구요. 민간기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민간기구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방송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왜 허가가 정통부에서 시설허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 문화부라던가 방송위원회에서는 허가 추천했느냐 위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정부가 허가하는 위헌 소지하고 두 번째 심의위원 이거 대통령 직속기구로 됐는데 방통위가 여기서 내용 직접 규제하면 내용 검열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기관의 검열을 피할 방법 없으니까 민간이라고 한 건데. 사실은 무슨 민간이냐 이 얘기 문제제기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규제다 라고 우리가 제시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심의 기능이 상당부분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젠 규제할 곳과 자율화 할 곳은 역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죠. 내용심의, 전수심의, 아니 광우병 소는 0.5%도 안보잖아요. 대표 뽑아가지고 보는데... 매체별로 다보는 거 안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샘플링 해서 하고 불만, 이의제기 들어온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심의기구의 역할이 왜 필요하냐면 정치 집단이 조직적으로 이의 제기 하거든요. 이익집단이 하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 역할을 만들어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규칙제정

권 있고 의사 결정이 확실히 강화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남준

네 고맙습니다. 고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고민수

반론 고맙습니다. 재반론 좀 드리겠습니다. 매체별 차별 규제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그거는 그렇게들 쓰더라고요. 매체별 차별 규제 이게 일상화된 용어인데 최 교수님께선 그 표현을 안쓰셨다면 제가 그 점은 매체별 규제의 차이 뭐 이렇게 정정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제된 사실로서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방송허가하면 위헌이다. 그래서 정통부가 방송국허가하고 방송위원회는 추천했다. 민간 그래서 의미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가 방송국 허가 하면 왜 위헌입니까 저는 헌법을 정공 하지만요, 이게 왜 위헌인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헌법체계는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본 총무성에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미국 FCC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FCC는 캐비넷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행정부라는 우리 개념상 행정부 executive에 들어갑니다. administration에 들어가구요. 그런데 정부가 방송국 허가하면 위헌이기 때문에 방송위원회는 허가 추천만을 갖고 정통부는 방송국 시설허가를 했다 라는 접근 방법은 오히려 이렇게 수정되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방송위원회가 한게 단순 허가추천이였다 라고 평가만 하는 게 여태까지에 많은 의견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단계로 분리해서 이해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인적허가 추천은 그 자체로서 그 자격여부를 이미 부여해 준거고 정보통신부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했던거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다. 물적 시설로서의 설비를 의미하는 방송국과 그 방송국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구분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누가 운영하는 게 맞느냐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게 맞느냐는 방송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에서 본다면 오히려 역으로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다는게 제 짧은 생각이구요. 이 주제에 관련해서만 준비한 게 있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심의위원 역할분담관련해서 이 지금 논의해야 되는데 재 반론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심의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면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율영역으로 가지 않느냐 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타율규제 자율규제의 논의가 있었지만 자율규제라는 것은 사실 모순형용입니다. 형용모순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는 게 규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규제라는 것은 외부에 의한 제한이거든요. 외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그것은 자유내지는 자율의 영역으로 회복 복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요. 제가 갖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게 좋지 않겠느냐하면 그 외부적 그러니까 타율적 규제라고 표현하시는 그 기준을 어느 선에서 설정할 것인가 최소한의 기준 그것만을 설정하면 나머지는 자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와 심의위원회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것을 위반하면 침해적 처분 효과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이른바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가치에 기여하는 객관적 관련성을 갖거나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가치를 비교해 양보 할 수 없는 공익달성에 국한되는 기준이 설정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헌법적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32조 2항 각 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치와 비교해서 실현에 기여하는 지 아니면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구체화 한 것이 방송심의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면 똑같이 100조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받도록 심의규정에서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거 벗어나서 많이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무효가 되어야죠.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상범위를 어떠한 가치설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관점에선 헌법적 관점에서 범위 줄여 놓으면 그 자율적 영역 회복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준

네 고맙습니다. 그 아까 조기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없으실 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15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80분이라고 하면 35분에 끝나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아닌데요. 제가 자율배식이야기를 하자면 자율배식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주제와 좀 벗어난 말씀도 있었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힘이 더 세져서, 김성벽 과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하는 부분이, 공공성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심의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 나라의 도덕이라든가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공공적 영역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가치고 뭐고 혼용이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배식이 실패한 본인은 떠나겠습니다.

<7차 시민미디어 포럼>

제 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O session 2 : 방송, 통신 융합 영역의 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자 : 안정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토론자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경달 인터넷 기업협회 / NHN 수석
김문연 PP협의회 / 중앙방송 사장
민영목 PD연합회 / KBS심의실 심의위원
심미선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논의 사항

1.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과 통신, 융합 영역의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2. 콘텐츠의 심의도 완전한 의미의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것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또한 완전한 방송통신융합법의 개정 시점을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수평적 규제 전환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

3. 기존의 '방송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심의 대상, 기준, 절차, 제재수단 중 반드시 재조정이 되어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윤정주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 들어와 주시구요...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뜨거운 열기를 가졌던 1세션의 토론에 이어서 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마이크를 2세션의 사회자이신 안정임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임

네 안녕 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저는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여자 대학교 안정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1세션과 방청객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발언을 모두에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앞에 우리 강남준 선생님께서 배식문제로 상당히 여러번 발언을 하면서 고민스러워 하셨는데... 저희가 1시간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주최측에 의하면 뒤에 약간의 여유분은 좀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좀 배식방법을 좀 바꿔보자 했어요. 앞에 부분 세션에서 저희하고 분명히 내용상의 어떤 차이는 두었지만은 상당부분 저희 세션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 세션에 계신 토론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 준비 해 놓으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질문사항을 4가지로 들였지만은 다 중첩되기도 하고 각각의 것들이 중첩되는 것이 독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괄해서 토론자 분이 생각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펼쳐주시는 방향으로 한 8분정도 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 부분이 방송통신심의부분에 대한 총론에 대한 얘기 정체성이라든가 법적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저희 부분은 각론에 좀더 가깝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일단 발족을 했고 법적기구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심의를 갖고 갈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안해야할 세션의 주제입니다. 토론회가 토론회로 끝나지 않으려면 적어도 당장가서 쓸 수 있는 몇가지 최소한의 한두가지라도 강력한 제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구요. 아마 여기 토론자 여러선생님들께서도 헛된 토론이 않으려면 여기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되시는 분도 나와 계시구요. 관계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토론이 당장가서 이렇게 적용됐으면 하는 생산적인 토론이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이십니다. 김경달 인터넷 기업협회, NHN 수석님이십니다. 김문연 PP협의회, 중앙방송 사장님 이십니다. 민영목 PD연합회, KBS심의실 심의위원님 이십니다. 심미선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님 이십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님 이십니다. 오늘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님께서는 토론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구요.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이십니다. 예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인데 세션은 상당히 기자회견장 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좀 편안하게 토론의 달인들이시니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논의 첫장을 우리 심미선 교수님께서 학자의 입장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7분에서 8분정도 부탁드립니다.

심미선

네 소개 받은 순천향 대학교 신방과 심미선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쪽에서 많은 연구를 해온 것은 아닙니다. 2년전 부터 청소년 위원회에서 케이블프로그램 지상파프로그램 내용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심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융합환경 하에서 심의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는 내용규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인데, 주로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융합환경 하에서는 지금보다 한단계 더 발전된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심의의 근거에는 콘텐츠가 있는데 이 콘텐츠는 문화고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심의가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교복을 입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퇴학을 시키겠다 정학을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한의 더 큰 일탈을 막기 위한 제재 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방송에서 심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더 큰 일탈을 막기 위한 방어장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융합 매체가 늘어나고 콘텐츠영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심의가 가능한가 또는 필요한가라는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다채널 환경 하에서 크건 작건 간에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방송환경은 더 유해해 질수 있고, 이런 유해한 방송환경이 당장은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유해한 프로그램이 유해한 문화를 형성한다고 본다면 심의규제라는 최소한의 방어벽을 남겨두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요즈음 심야에 케이블 방송에서 아주 음란한 유해성 영상물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요즈음의 이런 경향이 방송심의규제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송심의가 최소한의 규제든 아니면 자율규제든 간에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누구나 보편적인 서비스에서는 자유롭게 미디어를 이용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태까지의 심의규제는 지상파 방송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심의 규제 근거는 매체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심의 규제가 집중되는 측면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상파가 우리사회의 주류 매체였기 때문에 규제가 집중되었는데 과연 지상파 외의 다른 매체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면, 미디어 이용량에서만 보아도 인터넷이 지상파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케이블 역시도 보급률이 80%이상을 웃돌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규제나 심의에 사각지대에 있던 인터넷과 케이블에 대한 규제가 어떤 형태로 간에 규제 심의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심의 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2년 동안에 케이블TV 20채널에 대한 전 시간대 프로그램 분석을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한 3~4번 정도 조사 했는데요. 거기를 보면 앞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상파에서 19세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이 케이블로 가면 15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등급제가 매체에 따라서 달리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19세를 15세 12세가 볼 수 있고 더 재미있는 것은 7세 이하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보호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균보다도 7세 등급이랑 12세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의 유해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유해성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유

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축척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구 방송위원회가 매체의 유해성을 논의하면서 매체 유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발적으로 시청자 불만이 제기되면 심의가 들어갑니다.

거의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심의만 있지 장기적인 심의시스템은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매체나 채널에 대해서 어떤 심의기준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긴장을 하고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가령 올해 특정 케이블 매체의 청소년 보호지수가 70점이고, 내년에도 계속 70점미만으로 지속된다면 이 케이블 채널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해성 프로그램을 내보낼 때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 힘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부담감을 가지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정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방송을 유해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 심의의 역할은 일년, 이년 사이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 쪽에서 만들어 진다는 거죠.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 기준은 대부분 선정성과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외에 언어의 유해성을 추가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융합환경 하에서 이런 심의의 기준이 모든 매체에 고루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융합환경 하에서는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매체적 특성에 맞는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기준 설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연 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집단 FGD를 해보면 고등학교 애들은 지상파텔레비전은 유해하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서 못보고, 선정적인 것을 보려면 인터넷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정성이나 폭력성에 대한 규제는 지상파를 거의 중심적으로 하고 그 사이드로 케이블이 들어가는 데 정말 피해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지상파, 케이블을 통해서 선정 폭력적인 것 안 본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터넷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인터넷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점을 고려할 때 규제에 대한 남용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소고기 논란이 가열되면서 네이버에는 댓글이 달라지 않습니다. 또 최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소고기 협상관련 네티즌 논란이 많으니까 글을 올리거나 선동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에서의 심의규제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서 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의는 필요하고 매체별로 차별화된 심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새로운 매체 같은 경우에는 나이든 계층보다 젊은 계층이 많이 보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 심의 반드시 필요하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은 심의 기준 평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거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장기적으로 견제의 기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안정임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체 차별화 해야 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수개발과 같은 데이터적인 평가 해야한다. 심의 해야한다. 라고 말씀이 셨는데요. 저희가

드린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융합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제재 방식 심의 방식 이런 내용들 하고 그다음 장기적인 수평규제로 갈수 있을 것인가 완벽한 수평규제로 갈수 있을 것인가 그 방통위에서 2010년으로 그 기준을 잡고 있는데 법을 개정시점을 거기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 그 다음 현재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명시하고 있는 이런 심의기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재조정되어야할,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것들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질문 선에서 이젠 토론을 진행할거구요. 심미선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인 문을 여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황준호 연구원께서 이 쪽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바통이어주시죠.

황준호

네. 저도 오늘 사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토론회 부탁을 듣고 사실 저 혼자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 심의 전문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7,8시에 퇴근을 해서도 하루에 2,3시간은 꼭 TV를 보고 주말에도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서 제 별명이 테돌이입니다. 근데 그런걸 알고 절 선택해 주신 대단하신 여성민우회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말씀은 콘텐츠심의와 관련해서 수평적 규제체계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융합시대가 도래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서비스와 미디어가 융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심의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상이한 방송미디어랑 통신미디어 또는 방송콘텐츠와 통신콘텐츠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 또는 차이가 나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젠 것 같습니다. 흔히 쉽게 얘기 하듯이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미디어나 서비스에 실려질 때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까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융합이 도래했다고 해서 모든 미디어나 서비스가 모두 동질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합이 도래한다는 것은 과거에 물리적인 네트워크나 차이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매체간에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상황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양방향화의 발전으로 물리적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가 여러 망을 다 거슬러서 제공될 수 있게 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방송과 통신의 서비스가 특징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동일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융합시대가 도래한다할지라도 방송콘텐츠와 통신콘텐츠에 대한 어떤 심의 기준이나 콘텐츠 내용규제에 대한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지상파 방송과 또 개인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 등이 보호되어야 하는 전자우편이나 블로그와 같은 통신콘텐츠가 기준이 동일 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할 때 융합시대에 새로운 콘텐츠 심의 기준에 수립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특징적으로 유사해져 가고 있는 미디어 또는 서비스 간에 어떤 특징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런 특성과 상이함이 맞는 차별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 차별적 기준이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방송과 통신융합의 영역에서 콘텐츠의 기능적 구분과 관련된 작업

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2002년 유럽연합에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추진한 이후에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전송계층은 전송계층에 맞는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콘텐츠계층에는 콘텐츠계층에 또 맞는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의 근본적 목적이라는 것은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을 분리해서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양 계층에서 지향하는 경제적 산업적 목표 및 사회적 문화적 목표, 즉, 콘텐츠 계층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흔히 수평적규제체계의 도입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동일계층에 대한 동일 규제라는 것입니다. 전송계층의 규제와 콘텐츠계층의 규제를 분리해서 전송계층에는 전송계층에 맞는 규제를, 콘텐츠계층에는 콘텐츠계층에 맞는 규제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 내에서도 하위계층 간에도 동일한 계층 내에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지 전송 계층 내에서 규제 일원화, 콘텐츠계층에서의 규제 일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07년 작년 5월에 유럽연합에서 콘텐츠 계층의 규제 틀을 정비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은 융합시대 콘텐츠 규제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효한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콘텐츠와 유사한 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기획 편성해서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의 제공 방식과 이용자의 능동적 통제력이 낮은 서비스를 리니어(linear) 서비스라고 개념화 하고 이용자의 능동적 선택권이나 시간대 선택권이나 양방향성이 강조되는 이런 콘텐츠를 넌리니어(non-linear)서비스라고 해서 이 리니어서비스와 넌리니어서비스간에 콘텐츠 규제를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리니어서비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도덕적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그런 콘텐츠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넌리니어 서비스에선 기술적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것이 차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넌리니어 서비스라고 해서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것을 완전히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콘텐츠라 할지라도 기능적 특성과 이용자의 통제력에 따라서 규제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융합시대의, 아까 1세션에서도 융합시대를 수용자 중심적 콘텐츠 규제나 내용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 했을 때 그때 수용자 중심적 접근이라는 것이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향후 2,3년 내에 통합 방송법이 정비될 것이고 통합방송법이 정비되는 핵심 과제중의 하나가 이런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인데 콘텐츠 계층과 관련해서는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을 분리해서 전송계층에서의 시장획정라든지 업무분류 사업자 분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분리 된 다음에 콘텐츠 계층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융합시대에 콘텐츠 기준을 일원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콘텐츠의 특성을 찾아내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앞으로 방송통신 콘텐츠에 관한 규제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임

네 황준호 연구원님께서 상당히 학술적인 내용으로 풀어주셨는데 기존에 매체를 수직적으로 하던 규제에서 벗어나서 이젠 전송과 콘텐츠 개념으로 해서 수평적 규제의 가능성 현재 유럽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세션이 이제 앞 세션과 다른 점이 사업자분들을 토론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앞 세션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체성 부분에 강조가 돼서 여러 가지 법적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심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케이블, 지상파 이렇게 세분을 토론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는 것이 이 논의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김경달 수석님께서 토론 해주시죠.

김경달

저는 NHN에 있는 김경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무척 다이나믹하게 많은 업체들이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변화는 업체의 변화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기호 즉 입맛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빠른 변화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업계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안정감을 갖고 바라보기 보다는 재미있고 도전적인 환경으로 인식하는 편입니다. 더불어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슈 속에서 때론 신중하게 때론 다급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토론회 후반부에 방통심의위와 연관된 심의의 구체적인 케이스와 연관해서 각론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총론 차원에서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검색에는 다수의 금칙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금칙어는 성인인증을 거쳐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결과를 알고 싶어서 질의어를 쳤을 때, 다양한 질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당신 성인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합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의 접근에 대해 상당히 큰 진입장벽이자 제한일 수 있고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아니어도 볼 수 있는 정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드'란 단어도 얼마든지 성인인증과 무관하게 누구나 접근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연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단어와 연관된 차단되어야 될 유해정보나 불법정보 등 이런 것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격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들어갔을 때 일단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적정한' 결과 값을 보여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전체이용가의 콘텐츠가 보여 질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인인증을 하면 당신은 좀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게이트웨이를 뚫어 놓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성인인증 요구 페이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금칙어를 설정해야 한다. 차단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 것이죠. 이 단어와 관련된 것은 일단 차단이 우선이다는 생각, 즉 규제를 우선하는 형태의 사고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온라인 공간도 하나의 세상으로 이해해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혹은 통제 가능한 공간으로 이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실명제 때 사례도 있는데요. 댓글 악플이 많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정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과한 비유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우리 지구를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똑같이 그런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겠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더 최선을 찾아나갈까 고민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똑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특히 방통융합과 연관해서 방통결합의 단계이고 융합까지는 못갔다는 다른 토론자분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2006년 월드컵 때 TV로 월드컵 중계를 보면서도 다수의 유저들은 컴퓨터를 옆에 놓고 댓글 토론을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는지를 공유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셈이죠. 상당히 다른 소비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UCC, 즉 유저들이 생산하는 형태의 다양한 콘텐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UCC영역은 특히 방통심의위 입장에서 앞으로 업무적으로 힘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또 하나의 세상'으로서 온라인 공간을 이해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이 새로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결합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융합이 진짜 되려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거기에 함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속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꼭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간의 속도 차만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이해도가 다른 사람간에 속도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콘텐츠 중개(펌질) 및 생산까지 하는 능동적 유저가 있는 반면, 막연하게 온라인 공간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 눈높이의 차이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의 노력 실력을 좀 더 쌓고 그 토대 위에서 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심의의 내용들이 다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안정임

그 다음에 김문연 선생님.

김문연

중앙방송의 김문연입니다. 저는 소위 PP라는 차원에서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구요. 개별 중앙방송의 입장이라기보다는 PP협의회 일원으로써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관점으로서 그 실질적인 심의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최근에 케이블 TV 심야시간에 선정성 논란이 불거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널이랑은 거리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PP전체의 일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한편 PP협의회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정의 결의를 하고 자료도 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내려다보면 이런 자체적인 심의 노력이 이제 막 출범한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어떤 노력들도, 사실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 있어서의 집행력이랄까 하는 부분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가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점이고 저의 착안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몇가지의 유명무실한 제도적 접근이 실제로 심의가 여러 가

지 고민을 많이 하고 제도적 보안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용성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규제가 있기는 하고 벌금도 매기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들이 느끼는 어떤 압박이나 실용성은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최근 많은 PP프로그램들에 대한 벌과금 조치가 내려 졌는데 아주 심한 경우 많이 내려진게 TVN의 벌금이 삼천만원정도 매겨져 있는 데요. 그것도 몇차례 벌금을 받고도 계속되는 부분에 최고로 강한 벌금 규정을 내린 부분으로 보이는데 한 삼천만원 정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있는 입장이 유료채널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료채널 부분에서는 지상파나 심지어 인터넷 세상과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차별적 형태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데요. 실제 방송법상에도 32조에 매체별 심의 차별화 원칙이 명시돼 있구요. 그다음 그 밑에 심의 규정 5조를 보면 심의의 기본 원칙을 정했는데 여기에도 방송매체와 매체별 전문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사업자들이 잘 통제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언급과 법적인 체계와 조직이 수긍하는 뭔가는 다 있어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적거나 또는 문제가 뭔지는 알지만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할까를 저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죠. 청소년 보호시간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시간대에만 TV를 볼까요? 안 그렇거든요. 뭐 아주 구체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요즘 박지성 효과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경기를 보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0시, 11시 때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2시, 3시에 하는 때로 있어요. 요즘 그런 경기 있을 때문 2시, 3시 이거 보면서 끝나면 문자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적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 끝나자마자 채널 옆으로 돌려보면 정신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보호시간대로 만들고 어떤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심의위원들이나 저희들이 만드는 이런 형태의 접근의 체계성이랄까 그런것들 보다 이 지능화되는 청소년의 미디어 소비패턴이랄까요. 사실 못 따라 간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과 틀을 세워서 등급표시도 하고 시간대 설정도 하고 뭣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력도 어렵고 사실 그게 소비하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또 그것에 정말 스스로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지도 않고 또 실제 그런 것들을 잘 피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선 방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 하셨으니까 짧게 가구요. 두 번째가 기술적인 보안까지 방통심의위가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할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 인데 우선 제도적인 보안은 문제 제기 질문에도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고 지난 세션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선 많은 플랫폼들이 생기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전송수단이 생긴 만큼 문제에도 제기했듯이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부분은 가능성의 확인 모색의 차원을 넘어서 이젠 당연히 가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콘텐츠를 자율적인 심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사전 심의형태가 됐든 모든 매체에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확고한 어떤 심의에 대한 평가 내지는 체계를 반영시켜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자율심의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당이 안될테니까요. 자율심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하기는 한다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자체적인 심

의에 맡겨놓기 보다는 플랫폼별 유로채널은 유료채널, 인터넷은 인터넷 분야별로라도 스스로에 의한 자체적인 기구에 의해서, 공적인 기구가 아닐지라도 뭔가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어떤 주체를 설정하게 하고 거기서 자율적이지만 심의가 공식적으로 꾸준히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보완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자율심의 확대 부분이 필요한 것 같구요. 심의 규제 차별화는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지상파와 인터넷과 다를 수 있다 라는 것 이구요. 제가 좀 더 강조점을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기술적 보안 부분인데 방통심의위 입장에서는 사실 심의라는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확대 해석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헌데 저희 있는 이 분야에서 안방에 TV수신 환경을 보면 통상 심지어 인터넷도 보면 최소한 성인인증을 한다든지 최소한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채널의 IPTV나 위성방송만 봐도 셋톱박스가 있고 시청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거르는 장치가 있구요. 더 기술적으로 보면 안방으로 신호가 오는데 암호화된 신호가 일단 오는 거예요. 일단 어떤 장치를 통해서 수신하게 되어 있죠. 근데 아날로그 케이블은 그냥 열려 있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벽에 있는 단자 안에는 신호가 다 오픈 되어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셋톱을 사서 달아 놓지 않는 이상은 요즘은 TV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구요. 또 어떤 부모들은 멀티미디어 PC 설치해준 다음에 TV 단자 꼽아주면 밤에 보면 다 나옵니다. TV 아닌 것도 열려있습니다. 심의에 관한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둔다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도적 기술적으로 저희 안방의 환경이 저희 케이블이라는 유료 채널에 사업구조 상태가 저가형 셋톱박스 없는 형태로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백만 가구 중에 한 천삼백오십만 가구정도가 신호가 암호와 돼서 오지 않고 신호가 풀려서 집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성인물이 준비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에 기술적 보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방송통신위원회나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부분이 병행해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무방비 상태로 아이들의 머리를 그걸 막고자 하는 부모들이 따라 갈수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부분이 심의 기구와 다른 것 같지만 좀 더 고민하면 굉장히 노력을 하야하는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막는 형태로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부모가 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도 스스로에 있어서 스스로가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을 더 잘 찾아 갈수 도 있어요. 왜냐면 다 골라 놨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액서스 가능하다고 하면 누구나 찾아 갈수 있겠죠. 사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때로 역기능을 초래할 경우는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는 부모들에게도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어떤 환경에 노출 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기술적이 백업 또는 마인드의 확산까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안정임

네 감사합니다. 그 사업자 측에서 심의방안의 효율화 제안을 들으니 신선한데요. 좋은 제안을 상당히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구요.

민영목 위원님

민영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PD들은 정장을 잘 안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어서 좀 차려 입고 나갔더니 동료 직원이 어디가냐고 물어서 여성민우회 토론회 간다고 그랬더니 또 잘 모르고 그럼 그게 작업하러가는 작업복이냐, 그게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나가는 전투복이라고 이야기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D여서 PD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토론회도 PD연합회 추천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D연합회의 공식입장이라기 보다는 한 15년 동안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심의를 받아 왔던 입장, 또는 최근 한 10년 동안 방송사 심의 부서에서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심의 실무자로서 느끼는 어떤 제언이나 소망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족하고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런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구성이 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들 역시도 대단히 정치적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의 우려는 정치적인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지켜질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들을 강화하고 제재를 엄격히 해서 자칫하면 실용정부시대에 대단히 비실용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 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방송위원회 하나의 국 단위 평가, 심의국에서 하던 심의업무를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확장하다보면 자칫하면 위원회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가지고 고압적으로 군림한다던지 이런 식이 돼서 일선 제작자들의 제작 환경을 지나치게 협소화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착되면서 저의 초반 우려가 그냥 노파심이 되기를 기대해 보는 일면이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질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융합영역의 심의 대상 기준, 절차, 제재방식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통신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고 차별화 돼서 심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문을 닫은 방송위원회에 경우에도 홈쇼핑채널에 대한 심의를 같은 심의 규정으로 진행해 오다가 작년 8월에 와서 상품판매 광고를 목적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하면 광고를 하지 않는 국가기관 채널인 KBS1텔레비전하고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홈쇼핑이 같은 심의 규정을 갖고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심의규정 제 5조 2항에 보면 방송매체와 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에 차이를 고려해서 심의해야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KBS1텔레비전과 홈쇼핑을 같은 심의 규정으로 심의를 해왔다는 것은 대단히 무성의 했거나 아니면 무책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채널이 매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소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는 방송이라는 분야, 통신이라는 분야로 일단 나누어서 심의를 하고 방송의 경우에도 지상파, 케이블, 위성으로 구분을 해서 과거 방송위원회 때 방송심의 1부, 2부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했던 것처럼 그런식으로 차별해서 심의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수평적 규제에 대한 어떤 전환 가능성을 2010년을 기점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데 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의 방송환경이 어떻게 변

할 것인지 단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이한 시청환경이나 상이한 시청대상 소구대상에 차이를 보이는 이런 여건에서 완전한 수평 규제 심의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과거에 케이블 TV도 나오고 스카이 라이프가 탄생했을 때 처음에 기대 했던 것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IPTV라든지 또 다르게 등장할 새로운 어떤 방송의 매체들이 또 어떻게 정착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급하게 수평적 심의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수용자들의 환경변화 이런것들의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수평적 심의는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대상이나 절차수단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정필요성에 대해 일단 저는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수평적 심의를 해서 승복이 되는 심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 방송위원회 시절에도 PD들이 문제가 되던 프로그램의 담당PD들이 불려가서 의견을 피력할 때도 어쨌든 잘못됐다고 해서 불려가는 거니까 위축돼서 불려 가는데 PD 앉혀다 놓고 청문회 하는 식으로 다그치면 거기 불려간 PD는 아 여기서 따따부따 하면 주의를 받을 것 경고 받고 경고 받을 것 잘못하면 사과명령 떨어지겠구나 생각 때문에 대단히 뭐랄까요 할 말을 다 못하고 걸어나와서, 제재 받고 나와서 계속 거기에 승복을 못하면 수많은 갈릴레오들을 양산한단 말이죠. PD라는 개인이나 집단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강해서 고집스럽게 보일수도 있어도 정확한 근거 합리적인 논리에는 쉽게 승복 하거든요. 심의라는 절차와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받고 흔쾌히 승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제재를 다른 제작자들에게도 전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고참 PD 하나가 정년이 다 되가는 데 저 볼 때 마다 하는 얘기하나가 자기가 10여년 전에 개그프로그램을 하는데 개그프로그램에서 동네 불량배의 생활을 드라마 타이즈화해서 보여주었는데 불량한 복장에 헬멧을 안 쓰고 뒤에 동네 처녀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서 파출소에 끌려갔다는 연출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당시 방송위원회에서 불러서 헬멧을 안 쓰고 운전을 했다고 불러서 징계를 받았다 답니다. 근데 그 끝에 가면 파출소 순경이 헬멧 안 쓰고 운전했다고 꾸지람까지 했다는데 거기가서 또 따따부따 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하더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고 하면 심의가 단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씬이나 시퀀스 단위로 제재가 되고 단정화 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으면 합니다. 대단히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올미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상황자체에서 대단히 잘못 됐고 기의나 기표의 수준이 수위가 잘못 됐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PD가 의도 했던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 그 PD도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고 벌도 많이 받고 하면서 그 PD는 볼멘소리로 얘기 합니다. 정말 거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정말 싸가지 없는 신세대 부부의 일면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머리띠를 매고 싸가지 없는 신세대부부라고 표현 할 수도 없고 자막으로 싸가지 없는 신세대부부라고 표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잘못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올미다의 그 회에서 마지막 엔딩까지를 보면 자기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심의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생각하고 아까도 고압적인 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면 재심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재심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재심이 활성화 되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에 관해서 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가 충분이 검토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작자들은 심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세들이 뭐랄까 확실한 적립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립이 안되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지원 부분은 나중에 후반부에서 재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안정임

오랫동안 PD 하시면서 쌓인 것도 많으시고요. 하실 말씀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세분 토론자들 간 각 매체별로 토론을 드리면서 매체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민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내용규제 쪽에 지상파가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그 맥락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다면 PP협회의 김문연 사장님께서는 기술적인 어프러치 자체에서 내용과 관계없이 TVN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내더라도 위반하고 계속 가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형태를 이야기 하셨고 김경달수석님은 인터넷 자체는 이런 규제와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세 매체가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야 하는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누고, 어떤 부분을 같이 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마도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황성기 교수님께서 참석을 못하시면서 토론문을 보내 주셨는데 이걸 꼭 좀 전달을 부탁 하셨어요. 그런데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요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드린 자료가 이거기 때문에 다들 줄치고 읽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텐데... 기본적으로 황교수님께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가 기존의 방송심의제도하고 정보통신심의제도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화학적 결합은 아직 아니다. 설명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매체 융합 시대에 직면해서 기존의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던 심의기관들의 통합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물리적 결합도 심의기관에 통합을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매체기관의 통합이라는 그런 목표 이외에 좀 더 현실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 매체별 특성을 어떻게 심의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구요. 쭉 내려오셔서 가장 큰 문제 인터넷 콘텐츠다. 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자기의 이름을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심의에 가지고 갈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몇가지 문제점 중에 첫째 심의기관을 통합 됐지만 이것이 매체별 특성은 무시하고 동일한 기준이나 잣대를 적용해서 매체를 심의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활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매체기관은 통합되었으나 이것이 방송과 통신 모든 매체의 동일한 잣대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다 라는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아까 황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콘텐츠도 여러가지로 분화가 됐고 리니어서비스 넌리니어서비스로 구분되듯이 매체융합상황에서도 방송의 특수성을 전재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가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법리

적으로 볼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라기 보다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다. 따라서 민간인들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성이 보장은 되지만 수행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 그리고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유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해서 어떤 처벌 조항 기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구요. 그래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규제의 주체로 인정 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인터넷 콘텐츠 불법정보에 대해서 사법부의 종국적인 판단이었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사이트 폐쇄, 당해 콘텐츠 삭제 등으로 나타나는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가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법적인 어떤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 직접적인 내용규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그럼 기존의 매체는 어떻게 심의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라는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받아서 강혜란 소장님께서 아마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연결해 주시죠.

강혜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초반부의 열띤 쟁점이 있는 논의가 어찌 보면 다양하게 의견을 제출하는 논의로 이어지면서 약간 다운되는 느낌인데요. 제가 제기하게 될 내용은 그나마 다소 쟁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하셨던 김문연 대표님과도 상당히 충돌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방송법이나 망법에서 규정한 심의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좀 더 많은 논의를 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폭력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장치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장치로부터 일종의 안도감을 얻을 수 있고 사회 안전망으로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또한 내용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아무리 엄격하게 실행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콘텐츠는 더욱더 상업화되는 과정을 걸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경쟁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제를 어떤 내용, 어떤 장치로 기능하도록 할 것인가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고 상업화의 속도를 늦추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융합 영역의 심의에 관해서 커다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극단적인 상업적 표현은 엄격히 규율한다.' 입니다. 미디어는 상품이면서 문화이고 민주주의의 매개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진화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극단적 상업주의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보구요. 특히 앞 세션에서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그 규제의 대가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의 수익보다 더 적어질 수 있는 엄격하게 책임지우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최근에 쇠고기나 댓글이나

뭐 등등 나오는 것처럼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한다. 다만 영리적 목적의 상업적 콘텐츠는 엄격하게 심의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영리적 목적의 상업적 콘텐츠란 가입 기반의 수신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콘텐츠나 콘텐츠채널을 판매, 자신의 콘텐츠 이용자를 매개로 한 광고를 판매하는 자라고.... 이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앞으로 방통심의위원회의 여러 체계와 내용을 잡아가는데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번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법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지붕 두가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융합형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요. 때문에 당분간은 지상파 TV, 케이블TV, 위성방송은 현행을 유지한다. 그런데 IPTV, DMB 등등 융합서비스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 이것은 유료방송 플랫폼 지금의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준하는 그런 규제 체계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IPTV 특별법의 내용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방안은 없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관련 심의의 원칙은 상당히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주체가 존재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두 번째로는 '공공적 영역', 세 번째로는 '개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에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심의위에 핵심 대상을 사업자로 분명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해와 불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요하게 맡아왔던 심의위의 규정은 유해성과 불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황성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과 관련한 판정을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당장 이것들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바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들을 폐기해서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내용규제체계를 바로 세우는 방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인터넷 심의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물, 게임, 영화, 동영상, 등등 영리적 목적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민우회는 이미 오랫동안 영등위나 게임위 등 콘텐츠 심의, 특히 콘텐츠 등급을 사전적으로 부여하는 단위와 다른 심의기구의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핫라인 구축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매체 융합 현상 속에서 이런 것이 단일 플랫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때문에 이를 공론장에서 논의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정권 초기인 만큼 정부소위원회의 재편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도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 통신의 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통합된 만큼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정부 소위원회가 정리되는 시점에 게임위와 영등위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합치는 방식의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2번의 수평적 규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의 콘텐츠 심의는 매체별로 진행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수평적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앞서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체의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

다고 해서 모든 콘텐츠가 동일한 등급을 부여 받거나 동일한 기준에서 심의 결과로 이어 질 수는 없겠죠.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등화 시키는 것은 필요하겠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기준은 사회적 영향력과 접근성이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접근성의 문제도 비슷한 고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평적 규제로 이행하는 설계를 2012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야말로 멀티 유즈를 핵심적인 자기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과 함께 총체적인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지구요. 또 각각의 매체별로 콘텐츠 등급 분류나 심의 등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일 콘텐츠를 원스톱 방식으로 모바일 인터넷 방송 등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 시키고, 한 자리에서 특성에 맞게 한꺼번에 등급 부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두 개의 영역을 통합했기 때문에 그 외에 문화 관광부 산하에 있는 각종 등급체계가 통합된다면 이것들이 어떤 밀접한 연계관계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플랫폼의 차원을 고려한 등급심의, 예를 들어 아까 접근성과 관련해서 모바일은 등급부여를 성인과 성인이 아닌 미성년만을 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점을 고려한 매체별 등급 부여를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것들을 개별단위에서 다루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기구적으로 통합하지 않는다면 최초 등급 부여를 좀 더 존중하고 그것과 매체별 속성을 결합시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다시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많은 실무자들이 이미 알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망법상에서 보면 44조의 7 불법정보의 판정, 각종 금지 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의를 할 때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 법감정입니다. 국민들은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폐기하는 안이 최선의 해결방안도 아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안을 저희들 논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것을 전적으로 법원(사법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사법부로 넘겨야 할 영역과 제3의 센터로 가져갈 영역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과 같이 매체환경변화에 따라 별 달리 증폭될 요인이 없는 불법 시비 불법 판정은 사법당국으로 넘겨도 양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사법부에 맡기구요. 그것이 아니라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늘어날 부분, 즉 성폭력 문제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사행행위에 관한 법률처럼 시장상황이 경쟁적으로 치닫을수록 더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문제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내용규제가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다른 모델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로 재미있는 모델을 소개하자면, 영국에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와 같은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영국의 어린이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요. 이 안에는 검찰, 경찰, 공무원, 업계에 IT전문가, 카드사, 통신사 ,아동심리학자, 정신의학자, NGO등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이러한 사회적 위협요인

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복합적 활동을 벌여 나갑니다. 이 안에 경찰과 검찰이 직접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없을 뿐더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 두 가지 모두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내용규제 틀 안에서 위헌 시비를 가지고 있는 44조 7을 유지시키는 방안 보다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지금은 한지붕 두가족이기는 하나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면서 능동적인 통합을 이뤄나간다고 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의 법률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내용들을 바람직하게 정리하고, 사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권위주의적 문화를 청산하는 등 좀 더 능동적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발빠른... 앞서나가는 행보로 고민해나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댓글 시비나 PD수첩 논란들, 즉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아주 적은 양의 정치적인 심의에 집중하는 기능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훨씬 의미있는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정임

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의 수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강혜란 소장님이 깊이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셨구요. 1세션 같은 경우에 공방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2세션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세션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방할 꺼리들은 밤을 새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다양한 의견들에 인식의 수위도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창현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각 토론자 분들께서 최소한 한마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반드시 이것 하나만은 지켜야 겠다, 이것 하나만은 반영을 해야겠다. 라는 것을 한마디씩만 해 주시고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현

소개 받은 이창현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족된 것을 기념하여 여성민우회에서 책임을 갖고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러다 보니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다는게 뭐가 융합된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융합도 해보기 전에 어떤 원칙으로 해야하는 가를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연역적으로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는 강박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작 이 두가지 영역에서 교차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구요. 각각 방송은 전통적인 방식에 심의 체계가 이제 까지 왔었고 앞으로도 해야 할거 구요. 통신은 통신대로 그 역할들을 꾸준히 담당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평적 심의 체제로 바꿔야 한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그 각각의 영역들을 한지붕 두가족 체제에서 하시면서 새로운 사안들이 나올 때 마다 합의 과정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이 온당치 않은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방송심의의 내용은 대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사회적 갈등이 모두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까 올드미스다이어리 얘기를 민영목 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만, 탄핵방송보고서가 방송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송두율 심의를 보면 제재를 하려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충돌했었던 정치적 담론의 투쟁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심의가 마치 정치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처신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감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사회가 보수화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체제로 우리사회가 가고 있는데 방송과 통신이 어떤 한꺼번에 규율 되어지는 심의위원회조차 그런 정치적인 보수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중심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 어떻게 봐도 일종의 사후적 내용 검열 행위입니다. 저희가 심의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심의를 하려면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내용 규제에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민위원 아까 잘 설명했습니다. 고압적으로 PD들에게 얘기하고 하는 관행은 정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걸러졌으며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독일 영화 '엑스페리먼트' 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희망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장만 보이고 완장을 차면 뭔가 규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케이블 프로그램의 선정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선정적이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론을 통해서 선정적이다는 이슈가 제기 된 거죠. 저는 이거야 말로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엑스페리먼트'에 나오는 실험 대상처럼 위원회가 기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수평적 규제 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수평적 규제 체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수평이 대세고 따라 가야 할 것 같은데 왜 따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서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까지 자꾸만 텍스트 중심의 심의만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들이 어떤 콘텍스트 속에서 텔레비전 텍스트를 수용하는가 하는 것들은 고려해서 심의의 차별화를 고려해야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했던 리니어서비스와 넌리니어서비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접촉하느냐, 습관적으로 접촉하느냐, 커버리지가 얼마나 되느냐, 영향력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 인텍티브한 것이 얼마나 관여하는가 이런 것을 다 봐야겠죠. 저는 공교롭게 방송심의위원회 연예오락분과 지상파 담당을 2년 연달아 했습니다. 저는 심의 위원회의 자기 정당성을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텔레비전 시청하는 주 시청자는 20대 30대 인데요. 그것을 심의 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60이 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하시고 사장님까지 하시고 오신 분들인데 이런 연령의 차이 계층의 차이 이런 것들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심의하는 주체가 이용하는 사람과의 괴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의의 정당성을 저는 상당히 훼손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성적 폭력적 내용의 규제보다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댓글을 통제하라는 위원장의 발언과 그것의 관철 특히 광우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통제 의도 이런 것들은 우리사회를 정말로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방송통신심의의 방향이 사회적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색과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강혜란 소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상업적인 내용의 규제 둘로 구분했었는데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저는 상업적 내용의 규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강소장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처분에 의해 우리나라 닭들이 수천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AI가 닭들에게만 전염된다면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 닭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도 살처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생명적 가치와 위험사회에 대한 위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주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심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정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다양한 사람을 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논의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고 있으시지 않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자 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작을 하는 단계라 하고 생각하고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정리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한가지 당부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세션을 한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워밍업 세션이란 차원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에 황연구원님부터 해주시죠.

황준호

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 체제 얘기 나오고 방송통신융합 얘기 나오며는 오해를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나 마나 규제 완화 얘기 하려고 하는 구나하는 오해입니다. 사실 오늘은 콘텐츠 심의의 관련된 내용에서는 융합이라고 하는게 모든 것을 일원화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체별, 채널별 특성 차이에 대한 강조, 거기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여전히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며 아까 1세션에서도 나왔지만 자율규제 타율규제 그걸 뭐 자율규제다 타율규제다 이걸 하나로 정한 그걸 해 온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통신에 비해 방송이 좀 파지티브한 접근 방법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수용자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었던 것들이 모호한 조항이라든지 임의적, 자의적 적용에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것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에서 조금 재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미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창현 선생님께서 방송의 심의가 소통의 장이 되고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중추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율규제로 나아가는 게 앞으로 대세이고, 그렇다면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심의기구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시청자들이나 이용자들이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적극적인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공간속에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금의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유해한 영상물이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 규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에는 비용이외에 다른 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이라는 사회적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업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자율규제가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년 워스트프로그램을 발표 한다든지 워스트채널을 발표한다든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제함으로서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재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연

그 출범에 이런 마무리 하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열 순사 도둑하나 잡기 어렵다란 얘기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것들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령을 만들고 정책으로 만들고 해고 그것을 피할려고 작정한 사람들에 그것을 통제 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현재 위임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범위 밖에 무수히 많은 유해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보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의지를 가져달라는 말과 함께 부수적으로는 사업자나 콘텐츠에 유해하다는 것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유해 매체에 대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실제 현재의 문제에 부합하는 정책적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됐는데 방송에서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기능하고 통신에서의 자유로운 소통도 보장해주는 것이 윈윈전략이지요. 그러나 자칫 하면 방송쪽에 deregulation의 통신의 분위기를 덧씌워서 규제 철폐로 가고 통신 쪽에 쓸 때 없이 정치적 통제로 간다면 둘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민영목

제 바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될 수 있겠구요. 더 나아가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제언이기도 합니다. 새로 출범하면서 저는 심의 마인드 확산에 주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심의라는 게 일제시대부터 쭉 군사독제 시대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방송심의라는 미명아래 검열을 해왔거든요. 그런 원죄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심의를 검열 정도로 생각하고 쓸 때 없는 참견이나 간섭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거죠. 저는 KBS연수원에 조르고 졸라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또는 승진했거나 아님 재교육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방송심의에 대한 커리큘럼을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재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방송전문인력을 키워내는 교육기관들이 많죠. 방송작가들인 경우에 엄청난 열기를 갖고 있고, 아나운서, 리포터의 교육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방송심의에 관한 과정들을 넣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방송심의를 보는 시각들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PD들이 심의가 왜 필요하다고 물으면 이따금씩 이런 예를 듭니다. 그 한강 가운데 중지도에 경찰하고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거 보통 때는 의미 없습니다. 무슨 큰 사건이 터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설치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검문소를 피해서 다니거나 굉장히 불편해 하지만 그 검문

소를 의식을 하게 됩니다. 방송심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각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새로 출발하는 이런 제도 속에서 방송인뿐만 아니라 방송인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방송심의에 관한 마인드를 확산하는 일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김경달

심의 이슈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기구 및 기준에 대한 일원화 문제 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는 7세 관람가, 전체이용가, 12세, 15세, 18세가 등의 심의기준들이 있습니다. 심의 기관에 따라서 18세나 19세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요즘 영화가 들어오고 방송이 들어오고 그런 콘텐츠들이 소비 및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의 기준에 맞춰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차단하고 성인인증을 붙이고 해야할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일례로 12세와 15세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를 위해선 학부모의 확인을 받을 필요도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학부모의 개인 정보도 수집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나 합의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토론회는 무척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딱 떨어지는 가이드라인이나 기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로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심의위원회도 우리 사회 내에서도 역할이 계속 신장돼 나갈 것이고 융합환경 속에서 적절한 형태의 역할을 계속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CSI와 같은 미국드라마는 케이블에서는 15세, 공중파는 19세고, DVD가 나오면 18세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런 것이 콘텐츠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결국 심의 관련 일원화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콘텐츠 즉 CSI 자체만 심의를 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랫폼규제의 이슈로서 문제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유저가 모바일로 볼 수도 있겠고 TV로 볼 수 도 있겠고 케이블로 볼 수 도 있기에 그에 걸맞는 형태의 필요한 조치나 규제를 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케이드게임은 게임장 출입시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성인인증을 붙입니다. 그렇게 플랫폼에 적합한 형태의 규제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규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선 자율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것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초기에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일부 부작용 즉 자살 청부업자가 카페를 운영해 사람을 모으고 이런 사례가 나타날 때 서비스 기획 운영자들이 '블라인드 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면서 서비스를 건강하게 키워가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입지가 커지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려와 비판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건강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진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나 피해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공공의 영역일수도 있고 준 사법적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런 중간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망법 44조 7에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Notice & Take Down의 맥락입니다. 강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폐지되고 영국의 센터모델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현실에서는 무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 빈발하는 많은 문제들을 법 규율에 맞게 잘 처리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적 방법도 동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적절하게 문제들을 해소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혜란

보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청소년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고민해야 한다. 그런 사업자들의 지적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하구요. 오늘은 주제가 심의였기 때문에 심의 기구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콘텐츠 규제 얘기에 집중한 것이지 시민사회단체가 미디어교육은 외면하고 규제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미디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소통해가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저도 여러 자리에서 사업자 분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개개인으로 보면 모두가 훌륭한 인격과 인품,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 대안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콘텐츠로 나타나는가 입니다. 즉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결과물이 달라지고 그 결과물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규율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구요. 그런 차원에서 규제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단죄하거나 그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좀 더 열어놓고 논의하고, 때론 격론도 펼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정임

예 그런 관심이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게 하고 참석해주셔서 끝까지 앉아서 경청해 주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돕고 사회적인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 하고 토론자 여러분게 다 같이 박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